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추가(안 별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복무기간 보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중위 4호봉	중위 5호봉	중위 6호봉	중위 7호봉
공익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8퍼센트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비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포함한다)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경력의 80퍼센트를 복무기간으로 보고 이를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확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근수당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이 영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u>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u>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u> (제13조제1항 관련)							
복무기간 보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복무기간 보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중위 1호 봉	중위 2호 봉	중위 3호 봉	중위 4호 봉	중위 5호 봉	중위 6호 봉	중위 7호 봉		중위 1호 봉	중위 2호 봉	중위 3호 봉	중위 4호 봉	중위 5호 봉	중위 6호 봉	중위 7호 봉
공익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8퍼센트							공익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8퍼센트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비고: (생략)								비고: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과	
연 락 처	(02) 2110 - 3177